

#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에 의거, 회원의 입회자격, 입회절차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회원 자격의 취득

### 제2조(입회 신청자의 자격 요건)

① 본 협회와 저작권 대리중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관 제 3조에서 정하는 본 협회의 목적을 찬성하는 자는 입회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을 탈퇴한 자는 탈퇴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해야 입회할 수 있으며, 제명된 자는 제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3조(입회 신청의 절차)

본 협회에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(입회 결격 사유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.

1. 본 협회로부터 제명되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2. 본 협회에서 탈퇴한 후,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### 제5조(입회 승인)

제2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협회는 입회자격을 확인한 결과, 입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, 입회비를 납부한 때 입회를 승인한다.

### 제6조(입회비)

① 전 조에서 정한 입회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.

저작자 : 100,000원

② 납부된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③ 납부된 입회비는 회원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.

제7조(입회 통지)

협회는 입회 승인 후, 그 사실을 통지한다.

### 제3장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상실

제8조(회원의 징계)

-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, 회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·견책·자격 정지·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.
  1. 본 정관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2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②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9조(회원자격의 상실)

-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1. 탈퇴
  2. 저작권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
  3. 제명
  4. 사망 또는 실종선고
- ② 전항 제1호 규정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5.5.20)